제 92

행정명령

BRONX, DUTCHESS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지역의 재난 선포

2013년 2월 8일부터 계속 극심한 겨울 폭풍이 뉴욕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로 인해 Bronx, Dutchess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지역 내의 중요한 대중교통, 급전시설, 공중보건, 공공 안전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
이 눈보라는 1 -2 피트가 넘는 폭설을 뿌리고, 시속 50 마일의 강풍을 동반하며, 연안 조수가 3 피트 이상으로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상 상황은 대규모 정전과 홍수, 주택, 아파트, 상가, 공공 재산 및 민간 자산의 파손, 나무들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사고를 낳을 수 있으며, 경미하거나 심한 연안 침식을 야기하고, 공중 보건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.

이에,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의 법에 따라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, 이 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. 그러므로, 뉴욕 헌법과 행정법 2-B조 섹션 28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Bronx, Dutchess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Westchester 카운티 그리고 인접 지역들의 영토 경계 내를 2013년 2월 8일부터 주 재해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;

또한, 행정법 2-B조 섹션 29에 따라, 2013년 2월 8일을 기하여, 주 비상사태 관리실, 보건부, 교통부, 주 경찰국, 육해군부, 환경보존부,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, 공공 서비스 위원회, 화재예방 및 진압실, 노동부, 공원, 휴양지, 역사 유물 보존실, 일반 서비스실, 뉴욕주립대, 고속도로국, 뉴욕주 국토안보긴급서비스부, 기타 주 기관, 미국 적십자사에게, 필요한대로, 이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로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지역 지방정부와 주민을 도울 적절한 행동을 취할 권한 및 공공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권한을 줍니다.

또한, 이 선포는 연방 차량 운송 안전규칙(FMCSR)의 49 C.F.R. §390.23(a)(1)(A)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. 이 조건은 FMCSR의 390 - 399 부분의 구호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. 제설 관계자들이 중요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공공 전력 복구반이 뉴욕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FMCSR의 구조 활동이 필요합니다.

이에 따라, 본인은 주 비상관리실 책임자인 Gregory T. Brunelle을 이 사태를 처리할 주 조정관으로 임명합니다.

2013년 2월 8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